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고시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4년 2월 15일
상공자원부장관

제1조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①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1. 가격연동 석유제품 및 적용가격

○ 가격연동 석유제품은 아래에서 지정한 석유제품을 말하며, 이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을 그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단, 석유정제업자간 거래 및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용으로 공급하는 B-C유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적용을 배제한다.

2. 가격연동방법

○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의 최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하며, 매월 15일 0시부터 익월 14일 24시까지 적용된다.

= 아 래 =

(단위 : 원/ℓ)

가격연동 석유제품	1994. 2. 15~3. 14 적용가격
무 연 휘 발 유	171.79
등 유	163.32
저 유 황 경 유 (0.2W%)	134.54
경 유	128.73
저유황경질중유 (1.0W%)	114.01
저유황경질중유 (1.6W%)	111.70
경 질 중 유	107.88
저 유 황 중 유 (1.0W%)	93.90
저 유 황 중 유 (1.6W%)	90.08
중 유	81.23
저유황 B-C 유 (1.0W%)	78.82
저유황 B-C 유 (1.6W%)	73.36
B - C 유	58.39

= 다 음 =

-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반출가격 = 유종별 전월세전제조장반출가격 × (1+당해월 조정요인)
+ 특별소비세액(휘발유, 경유는 교통세액) + 부가가치세액
- 당해월 조정요인 = (당해월 복합원가 ÷ 당해월복합수익) - 1
- 당해월 복합원가 = (도입원유비 + 운임 + 보험료 + 관세 + 석유사업기금 + 부대비
+ 유전스 이자 + 국내차입금 이자 + 연료감모 - 기금환급액) × 환율
+ 정제비+가스안전관리기금 + 품질수수료 + 환차손익
= {1.0570 × FOB + (1.0390 FOB + 0.7742) × 관세율 + 0.6061
× 석유사업기금+0.7794} × 환율 + 2,960 + 114.2027 × FOB
× (직전 3개월간 환차) ÷ (직전 3개월간 일수)
- 당해월복합수익 = 가격연동석유제품의 판매수익 + 자유화유종의 판매수익

- 주 : 1)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 반출가격은 원/ℓ 로 표시하며, 무연휘발유, 등유 저유황경유(0.2W%) 및 경유는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기타유종은 소숫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 유종별 세전 제조장반출가격은 주1)에 의해 결정된 유종별 세포함제조장반출 가격에서 특별소비세액(휘발유·경유는 교통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역산하여 차감한 가격으로 한다. (원/ℓ 로 표시하며, 소숫점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 3) 유종별 전월세전제조장반출가격이란 본 고시에 따라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 적용된 가격을 말한다.
- 4) 당해월 조정요인은 백분율(%)로 표시하며, 소숫점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5) 당해월 복합원가는 원/B로 표시하며,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6) FOB는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석유정제업자가 통관한 원유의 FOB 가격을 물량가중평균에 의해 계산하여 적용한다. (\$/B로 표시, 소숫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 FOB가 확정되지 않은 항차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납부시 적용한 수입면장상의 FOB를 적용하며, 상기 당해월 복합원가와 확정 FOB에 의한 당해월 복합원가와의 차이는 익월 복합원가에 가산한다.
- 7) 관세율은 직전월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직전월중에 관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직전월 통관원유의 물량가중평균에 의해 계산하여 적용한다. (백분율(%)로 표시, 소숫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8)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사업법 제17의 3 제1항제1호에 정한 수입금으로 직전월의 수입금 단가를 적용하되, 직전월중에 수입금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직전월의 통관원유의 물량가중평균에 의해 계산하여 적용한다. (\$/B로 표시, 소숫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9) 환율은 미국달러의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직전월의 날짜 단순평균치를 적용한다. (원/\$로 표시, 소숫점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 10) 직전 3개월간의 환차는 직전월 말일의 환율에서 전전전전월 말일의 환율을 뺀 값을 적용한다. (원/\$로 표시, 소숫점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 11) 직전 3개월간 일수는 전전전월 1일부터 직전월 말일까지의 날짜수를 말한다.
- 12) 가격연동제품의 판매수익은 이 고시에 의하여 전월 15일부터 당해월 14일까지 적용되는 세전제조장반출가격을 전년도 정제 물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원/B로 표시,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13) 자유화유종 판매수익은 전월의 자유화유종의 판매수익으로 하되, 상공자원부장관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전월실적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잠정치를 적용하고 다음월에 이를 보정한다. (원/B로 표시,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14) 단, 정부는 국제원유가격 급등락으로 국내유가와충이 필요할 경우 본 고시의 연동공식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석유정제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직전월 통관원유의 FOB 자료 (항차별 통관일자, 물량(배럴), 단가(\$/B) 및 수입면장)와 전월의 자유화 유종판매가격을 대한석유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석유협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유종별·유통

단계별 가격을 계산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매월 14일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단, 대한석유협회는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유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프로판 및 부탄의 제조장반출가격

(단위 : 원/kg)

	세 전 가 격	세포함가격
프로판 (일 반 용)	190.66	230.70
프로판 (도시가스용)	153.63	185.89
부 탄 (일 반 용)	190.18	230.12

주 : 석유정제업자간 거래 및 공업원료용 나프타를 대체하는 프로판 및 부탄에 대하여는 상기 최고판매가격 적용을 배제한다.

④ 전국균일 제조장반출가격 적용제품 및 지역

적 용 제 품	적 용 지 역
무연휘발유, 등유, 저유황경유(0.2W%), 경유, 저유황경질중유(1.0W%), 저유황경질중유(1.6W%), 경질중유, 저유황중유(1.0W%), 저유황중유(1.6W%), 중유, 저유황B-C유(1.0W%), 저유황B-C유(1.6W%), B-C유(4.0W%), 프로판(일반용), 부탄(일반용)	서울, 인천, 수원, 춘천, 남원, 신대인, 목포, 여수,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순천, 강진, 영산포, 광주, 청주, 충주, 제천, 천안, 법성포, 삼천포, 충무, 마산, 대전, 홍성, 서천, 오천, 군산, 전주, 이리, 정주, 진주, 부산, 울산, 포항, 대구, 안동, 점촌, 김천, 영주, 제주, 온산

주 : 1) 정유회사는 상기제품에 대하여 상기 적용지역에서는 구매자로부터 제조장 반출가격 이외의 별도의 수송비를 청구할 수 없음

- 2) 상기 적용지역에서의 제품인도 우선순위는 정유공장, 저유소, 부두, 역두입
- 3) 정유회사는 구매자가 상기 적용지역에서 제품인도를 요구할 경우 구매자가 요구하는 지역에서 인도하여 줄 책임을 지며, 구매자의 요구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인도하게 될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지역까지의 수송실비를 구매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 4) 발전사업용 방카씨유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정유공장 인접지역 발전소 및 타발전소 구분없이 각 발전소 도착기준으로 적용함
- 5)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주도내에 일정량의 제품을 비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정유회사가 별도 부담하여야 함
- 6) 정유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연근해 어업용 면세유류를 정유공장 (각 정유회사의 부산, 인천, 울산, 온산, 여천 소재의 저유소를 포함한다)에서 구매하여 그 책임으로 수송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송함으로써 발생한 실 수송비(세전 4.50원/ℓ)를 차감한 가격을 적용함

제 2 조 석유류제품 판매수수료의 최고액

(단위 : 원/ℓ)

유종별 \ 유종단계별	대 리 점	주유소 및 판매소
무 연 휘 발 유	23.00	37.00
등 유	14.00	20.00
저 유 황 경 유 (0.2W%)	13.00	18.00
경 유	13.00	18.00
저유황경질중유(1.0W%)	8.91	-
저유황경질중유(1.6W%)	8.91	-
경 질 중 유	8.91	-
저 유 황 중 유 (1.0W%)	9.10	-
저 유 황 중 유 (1.6W%)	9.10	-
중 유	9.10	-
저 유 황 B-C유(1.0W%)	9.80	-
저 유 황 B-C유(1.6W%)	9.80	-
B - C 유	8.80	-

프로판(일반용) (원/kg)	95.83	148.47
부 탄(일반용) (원/kg)	73.88	-

- 주 : 1) 위 수수료중 대리점수수료는 주유소(판매소) 또는 수요자까지의 수송비등 제경비를 포함한 것이며, 프로판의 판매소 수수료는 수요자까지의 배달료(76.77원/kg)등 제경비를 포함한 것임
 2) 프로판(일반용)의 경우 도서벽지중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위 수수료외에 적정 추가 수송비를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수 있음

제3조 프로판(일반용)을 소비자에게 용량단위(m³)로 판매할 경우 최고판매가격

- ① 제1조제3항 및 제2조의 프로판(일반용)을 소비자에게 용량단위(m³)로 판매할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용량판매단가(원/m³)로 환산된 금액을 프로판(일반용)의 최고판매가격으로 적용한다.
 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

$$\text{용량판매단가(원/m}^3\text{)} = \frac{\text{중량판매단가(원/kg)}}{\text{지역별 표준기화율(m}^3\text{/kg)}} \times \text{조정기압력 보정계수}$$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위 산식에 의하여 환산된 용량 판매 단가는 소수점 세제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 지역별 표준기화율

지역구분	표준기화율(m³/kg)	해당시도
중부지역	0.5030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대전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남부지역	0.5064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지역	0.5104	제주도

주) 해당 시·도내에서 직할시등으로 승격 독립되는 경우 당초 해당 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조정기 압력 보정계수

조정기 압력(mm H₂O)	조정기압력 보정계수	비고
* 280	1.000	기준압력
600	1.0302	
1,000	1.0679	
1,500	1.1150	
2,000	1.1621	
2,500	1.2093	

* 조정기압력 (280mm H₂O)은 조정기에 R280으로 표시되어 있음

= 부 칙 =

- 이 고시는 '94. 2. 15 0시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동력자원부 고시 제88-23호(1988. 6. 8) 및 이의 개정고시들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단,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26호('93. 12. 31)에 의한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고시는 '94. 2. 14일 24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1994. 2. 15일부터 1994. 3. 14일까지는 가격연동석유제품에 대하여 본 고시 제1조 ①항의 '아래'에 지정된 '1994. 2. 15 ~ 3. 14 적용가격'을 세전제조장반출가격의 최고액으로 한다. ♣